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- 133호

이 조례(안)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
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우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(“21.12.31.)함에 따라 기금의
안정적 운용과 체육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금 존속기한 연장
- 조직개편 미정비 사항 및 관련규정 제명 정비
- 오·탈자 등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동정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전화 : 3396-4687, FAX : 3396-8636, E-mail : moon9797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제7조③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③항 위원장은 시민친화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제13조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(회계공무원)②항 기금운용관은 동정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.

제14조②항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(기금의 결산)②항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,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4조(기금의 재원) ---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-----.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③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	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③--- 시민친화국장-----.
제13조(회계공무원) ②기금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.	제13조(회계공무원) ②----- 동정부과장 -----.
제14조(기금의 결산)②항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	제14조(기금의 결산)②항2호 대차대조표 -----
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15조(존속기한) ----- 2026년 12월 31일-----.
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,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----- 「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.